K-IFRS 제1115호 실무이슈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2018. 5. 17.

홍현선 책임연구원
정세주 선임연구원

KAI

We bring the finest expertise and insight to our work.
We maintain our independence and fairness.
We are transparent in our decision-making process.
We pursue honesty and integrity.
We trust, communicate openly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이 내용은 강의를 목적으로 강사 개인의 식견과 견해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한국회계기준원 또는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Korea Accounting Institute

1 수익정착지원 TF 소개

2 실무적용 쟁점사항

I

Korea Accounting Institute

수익정착지원 TF 소개

수익 정착지원 TF의 목적 및 역할

목적

-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8년부터 시행) **적용 지원**

역할

- 수익 기준서 적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 논의,**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 논의 안건 : 기준원 홈페이지로 접수한 이슈, TF 참가자 등이 제기한 이슈 중 선정
- TF 논의 결과 공유를 통한 **지식 전파**(knowledge transfer)
-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질의회신연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론 내리거나 **IASB**나 **관련 기구**에 알려 IFRS 개정, 해석 요청

수익 정착지원 TF의 구성

한봉희 위원 (아주대 교수)

삼일, 삼정, 안진, 한영

회계관리국

LG상사, LG유플러스, 동부

-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대한건설협회
- 적용이슈 취합 전달, 논의결과 공유

기준원 담당

❖ **(회의) 총 15회 개최** (2016년 8월부터)

수익 정착지원 TF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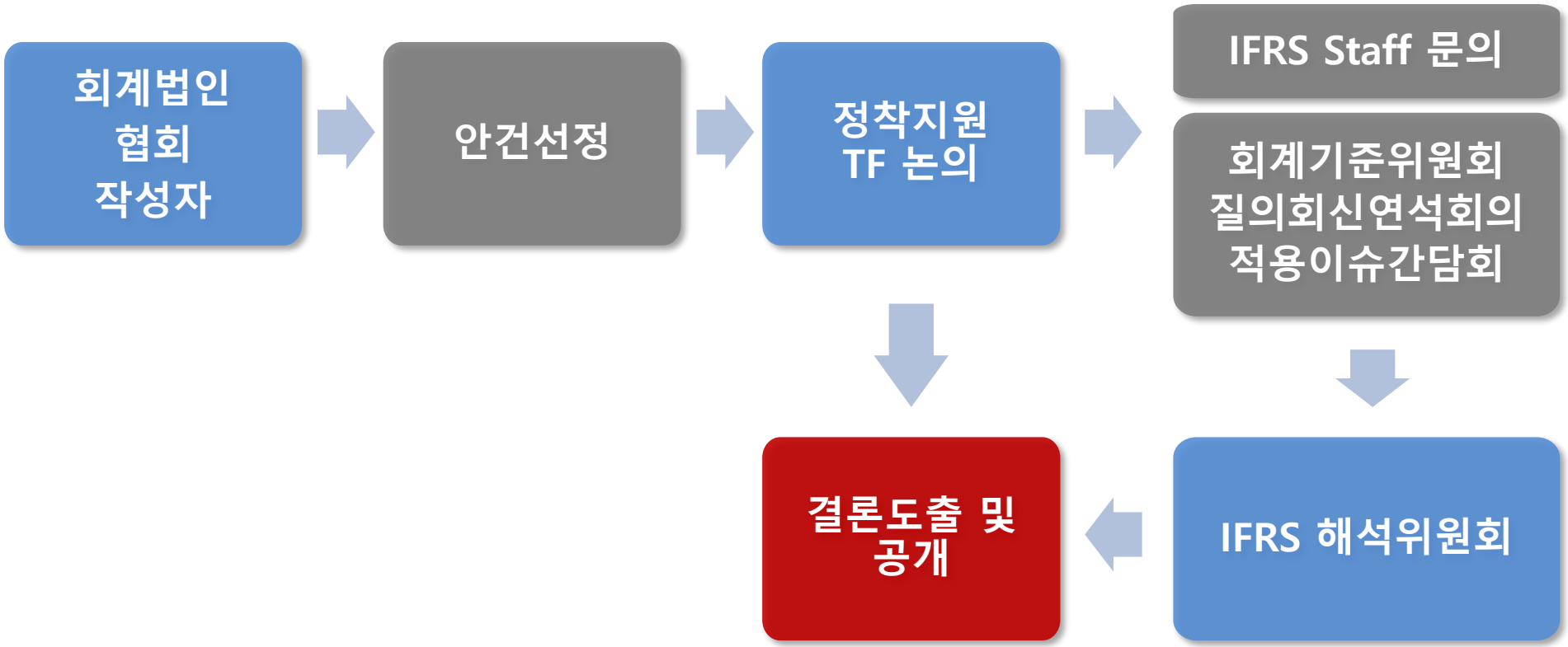

수익 정착지원 TF 논의사항

1. 제1115호 (수익)

Step01	Step02	Step03	Step04	Step05
고객과의 계약식별	수행의무 식별	거래가격 산정	거래가격 배분	수익 인식
	품질보증 독점판매권 선분양 APT -토지와 건물 할인쿠폰회계처리 의약품 위탁생산 건설 중 아파트분양 여행패키지 상품	상품권 할인판매 할인쿠폰 유의적 금융요소		라이선스 수익 고객화 된 제품 산업용지 분양 선분양 APT -지급청구권 -토지 수익 인식 선박건조 -지급청구권 -적자공사(측정 가능/불가능)

※ 그 밖의 쟁점사항 –포트폴리오 회계처리(선분양 APT), 재매입약정

2.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공사손실충당부채

수익 정착지원 TF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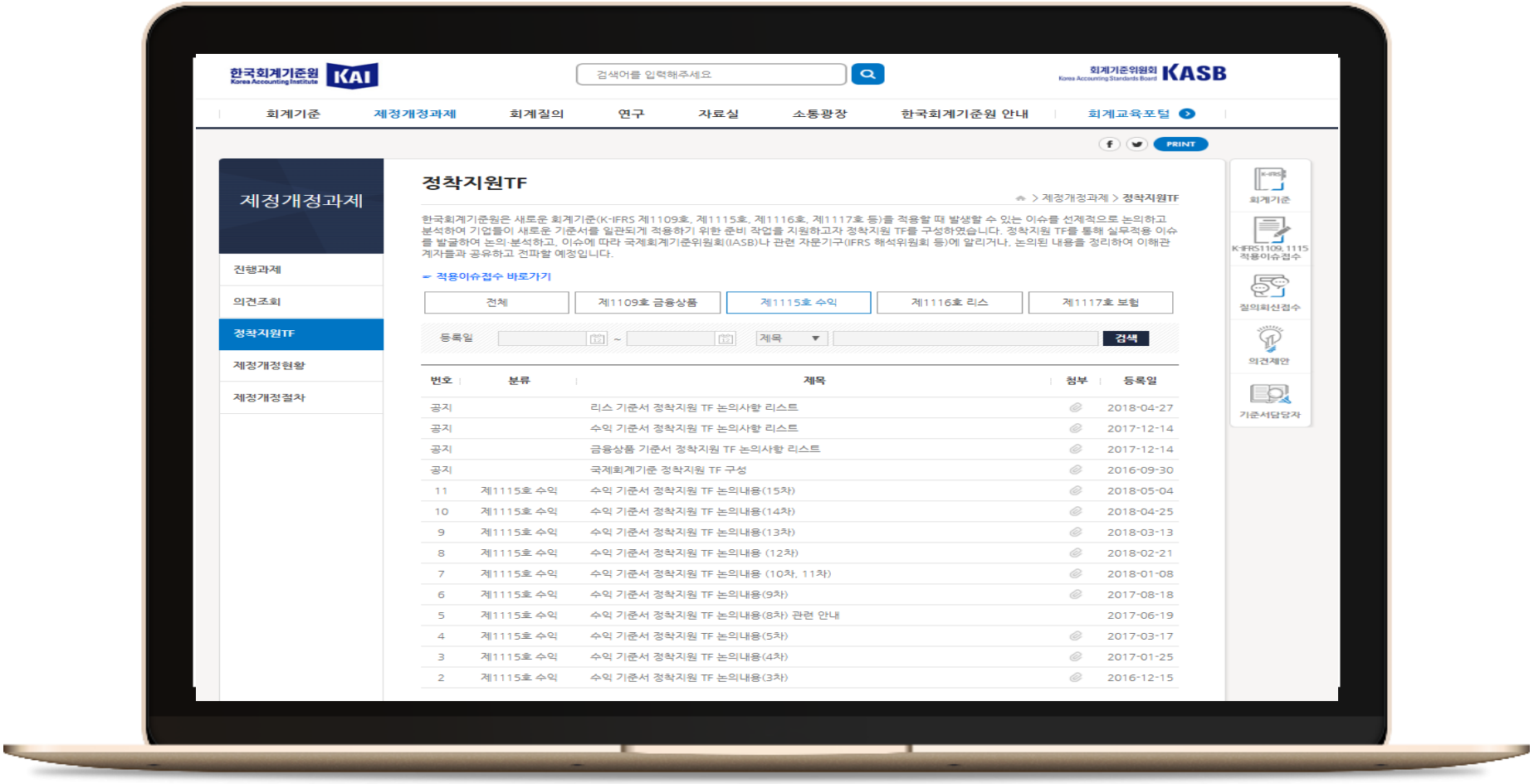

II

Korea Accounting Institute

실무적용 쟁점사항

개관

고객과의 계약식별

수행의무 식별

- ✓ **품질보증**
- ✓ **의약품 위탁생산**
- ✓ **여행패키지 상품**
- ✓ **선분양 아파트**
  - 토지와 건물

거래가격 산정

거래가격 배분

수익 인식

- ✓ **선분양 아파트**
  - 지급청구권
  - 토지 수익 인식

※ 그 밖의 쟁점사항

- ✓ **선분양 아파트 : 포트폴리오 회계처리**
- ✓ **재매입약정**
- ✓ **제1037호 공사손실충당부채 (IFRS 해석위원회의 '18년 3월 결정사항)**

개관

PART 1

선분양 아파트 자체분양공사

1. 토지와 건물 (2단계)
2. 지급청구권 (5단계)
3. 토지 수익 인식 (5단계)
4. 포트폴리오 회계처리

PART 2

기타 실무적용 쟁점사항

1. 품질보증 (2단계)
2. 의약품 위탁생산 (2단계)
3. 여행패키지 상품 (2단계)
4. 재매입약정
5. 공사손실충당부채
   (IFRS 해석위의 '18년 3월 결정사항)

Korea Accounting Institute

PART 1
선분양 아파트

PART 1 선분양 아파트 : 배경정보 (사례 1-4 공통)

- 기업(건설사)은 토지를 취득하고 관계 법령과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따라 고객과 선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자체분양공사를 하고 있음
- 고객은 계약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공사기간에 걸쳐 분할납입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아파트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됨

※ 주요 계약 내용(예시)

❖ 고객의 분양대금 납부 일정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잔금 (입주시)	합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납부비율	10%	10%	10%	10%	10%	10%	10%	30%	100%

❖ 고객은 1차 중도금 납부 전까지는 기업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1차 중도금 납부 후에는 기업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

❖ 1차 중도금 납부 전에 고객이 분양계약을 해제하면 고객이 납부한 계약금(분양대금 총액의 10% 상당액)은 위약금으로 기업에 귀속됨

❖ 고객이 중도금을 계속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업은 14일 이상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1차 중도금 납부 후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기업은 기납부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고 위약금은 기업에 귀속됨

1. 토지와 건물 (2단계)

쟁점사항

토지와 건물공급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볼 수 있는가?
(토지와 건물공급이 구별될 수 있다고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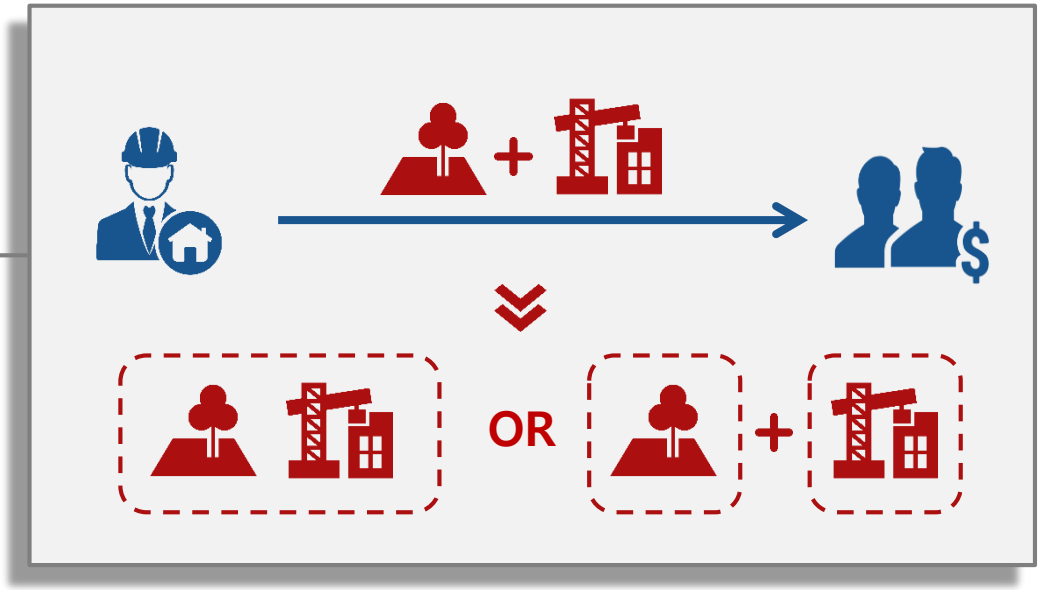

관련 제1115호 내용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구별됨

≫ 하나의 수행의무

1 재화나 용역이 구별될 수 있음

-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하여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음

2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약속이 계약상 구별됨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음

※ **약속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목적

① 각 재화나 용역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지

②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투입한 **결합품목을 이전**하는지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의 예

✓ 재화나 용역을 **사용**

✓ 폐물 가치보다 큰 금액으로 **매각**

✓ 그 밖에 경제적 효익이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보유

둘 이상의 약속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예

✓ 해당 재화나 용역과, 다른 재화나 용역을 **통합**하는 유의적인 용역 제공(**결합산출물**을 위한 **투입물**로 사용)

✓ 해당 재화나 용역은 다른 재화나 용역을(에 의해) 유의적으로 **변형**하(되)거나 **고객 맞춤화** 함(됨)

✓ **상호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음

1. 토지와 건물 (2단계)

제시된 의견

견해 1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

- 고객은 토지나 건물 중 하나를 얻는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입지(location)에 있는 특정 구조물(structure)의 공간(아파트)을 얻기 위한 약속**이므로 토지의 양도 약속을 계약에서 별도로 식별하기 어려움

견해 2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

- 토지와 건물은 서로 유의적으로 변형하거나 고객 맞춤화 하지 않고, **상호의존도와 상호관련성이 높지 않으므로,** 토지의 이전 약속과 건물의 이전 약속은 계약에서 별도로 식별될 수 있음

1. 토지와 건물 (2단계)

TF 논의내용

토지와 건물공급이 계약상 구별되지 않는다는 의견(하나의 수행의무)이 다수

- 토지와 건물은 결합산출물이라는 의견
  - ✓ 아파트는 법률상 집합건물이므로 토지와 건물은 불가분의 관계임
- 토지와 건물은 상호 의존도와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의견

2. 지급청구권 (5단계)

쟁점사항

- 선분양 아파트 공사에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가?
  (계약기간 내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존재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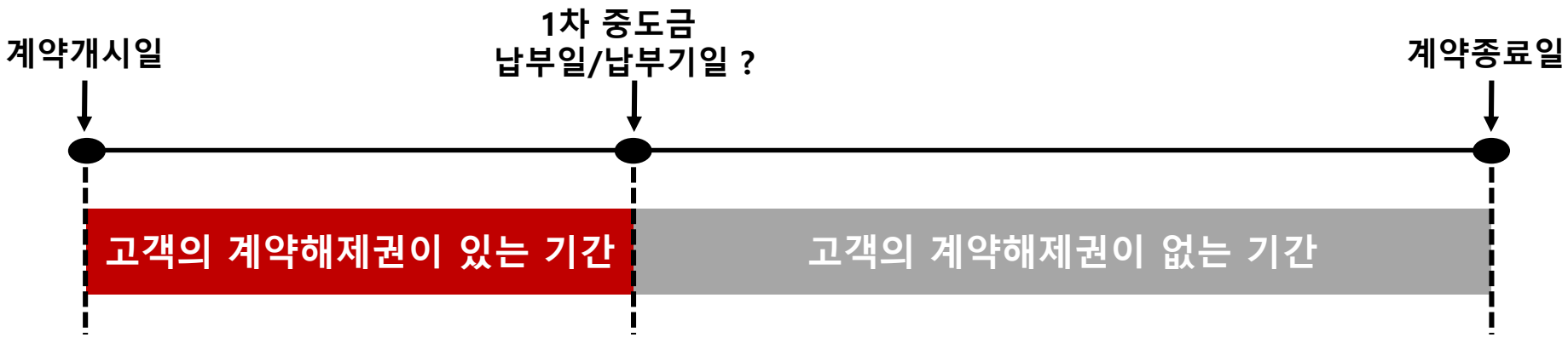

2. 지급청구권 (5단계)

관련 제1115호 내용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면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기간에 걸쳐 고객에게 이전

» 기업은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 (계약 개시시점에 판단)

문단 35.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조건
(3) 자산이 기업에 ①대체용도가 없고, **②지금까지 수행 완료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음**

① 대체용도 없음

-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에 주는 영향 검토. 계약 종료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음(문단 B6)
- **계약상 제약**이 실질적임(문단 B7)
- **실무상 제한**(전환 시 유의적 경제적 손실) 있음(문단 B8)

②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 있음

- 고객의 사유로 계약 종료 시 적어도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보상금액**(판매가격 근사치, 예: 원가+적정이윤)을 받을 권리가 **계약기간 내내** 존재(문단 37·B9)
- **고객이 종료할 권리 없이** 계약을 종료하려 할 때 계약/법률에 따라 **재화를 계속 이전**하고 그 **대가 지급을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기업에 있는 경우(문단 B11)
- 지급청구권과 그 집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계약 조건**과 관련 **법률이나 판례**를 참고(문단 B12)

2. 지급청구권 (5단계)

결론 (질의회신연석회의)

계약개시일

1차 중도금
납부일/납부기일 ?

계약종료일

고객의 계약해제권이 있는 기간

고객의 계약해제권이 없는 기간

제1115호 문단 37, B9 적용

수행완료부분 VS 보상

제1115호 문단 B11 적용

기업의 권리
(계속적 재화·용역 이전, 대가 지급요구)

- ✓ 고객의 해제권이 있는 기간이 납부 기일인지 실제 납부일인지는 법률적 판단 필요
- ✓ 계약조건과 상황에 따라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계약과 인식할 수 없는 계약이 있을 것임

3. 토지 수익 인식 (5단계)

쟁점사항 및 관련 제1115호 내용

아파트 분양계약에 진행기준을 적용할 때 토지에 대한 수익인식 방법은?

※ 가정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에 따른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
- ✓ **토지와 건물을 단일의 수행의무로 봄**

계약 개시 시점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재화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가) 재화가 구별되지 않음

(나) **고객**이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때보다 유의적으로 이른 시점에 해당 재화를 **통제**하게 될 것임

(다)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총 원가 대비 유의적

(라)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 기업(본인)이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음

3. 토지 수익 인식 (5단계)

TF 논의내용

건물 건설의 진척도와 동일하게 원가에 산입하고 수익을 인식

- 관련 용역 제공 전에 고객이 토지를 통제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 법률상 집합건물에서 토지는 건물과 불가분 관계에 있으므로, 진척도에 비례하여 토지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 단지 내 각 아파트는 동일한 계약조건이 적용되나, 분양가격은 각 아파트별로 결정 (같은 평형이라도 가격은 다를 수 있음)
-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며, 진행률은 투입법(투입원가)으로 측정한다고 가정
- 아파트 전체의 외부 구조물을 먼저 건설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아파트 내부 공사를 시작

(회계단위) 상기 자체분양공사와 관련하여 아파트 단지의 전체 계약들을 하나의 회계단위*로 보아 K-IFRS 제1115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특성이 비슷한 계약들의 포트폴리오

관련 제1115호 내용

1과 2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르지 않다면,

» 1 적용 가능

1 특성이 비슷한 계약들의 포트폴리오에 적용

2 포트폴리오 내의 개별계약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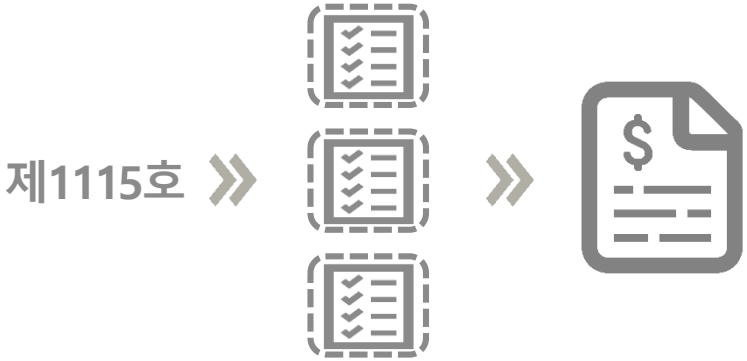

제시된 의견

견해 1 단일 포트폴리오(아파트 단지의 계약 전부나 일부)를 회계단위로 볼 수 있음

- 제1115호를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적용하더라도 **개별 계약 수준에서 적용**하는 것과 **중요한 차이가 없을 것임**
  - ✓ (예) 각 계약세대별 면적 기준으로 공사원가를 배부한 금액을 개별 계약별 공사원가의 대용치로 간주하고 개별 계약별 진행률을 측정하면, 개별 계약 수준에서 적용한 결과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포트폴리오에 단일 진행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와 동일함

견해 2 개별 계약을 회계단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

- 제1115호를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적용하는 경우와 개별 계약 수준에서 적용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중요하게 차이**가 있음
  - ✓ 아파트의 물리적 건설은 세대 단위(개별 계약)별로 이루어지므로 **각 세대의 진행률이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음**
  - ✓ 인테리어 등 마감재 원가는 개별 계약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계약의 공사원가를 추정하기 위한 **공사원가 배부기준**으로 **계약세대별 면적 기준만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TF 논의내용

일정 요건 충족 시 단일의 포트폴리오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음

- 개별 계약에 적용한 결과와 포트폴리오에 적용한 결과가 중요하게 (materially)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포트폴리오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음
  - ✓ 기업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 합리적인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단, 계량적 분석결과를 반드시 제시할 필요는 없음*

* 제1115호 문단 BC69와 BC70에서는 포트폴리오 접근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밝히고 있음

① **계약별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겪는 실무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접근법을 규정하였음

② 포트폴리오의 규모와 구성을 판단할 때, 개별 계약에 적용한 결과와 포트폴리오에 적용한 결과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해야 하나, 각 결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음

Korea Accounting Institute

PART 2
기타 실무적용 쟁점사항

1. 품질보증 (2단계)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 A사는 차량 판매 시 차체, 일반 부품, 엔진 및 동력전달 주요부품을 구분하여 각각 무상보증 제공
- A사가 제공하는 보증을 고객이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은 없음
- 다음 조건이 충족되고, 자동차를 구성하는 일반부품 및 동력전달장치 관련 부품의 재질 또는 제조상 결함이 고장 원인임이 기술적으로 밝혀지면, A사는 해당 부품을 수리하거나, 신품이나 사후 보증용 부품으로 교환
  ① 고객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관리·사용
  ② 보증수리 기간이 완료되지 않음
  ③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보증 주행거리 이하
- K국과 S국에서는 자동차 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보증의 범위나 기간을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증의 유형(확신 유형, 용역 유형)을 판단할 때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제공하는 보증기간의 산정 방법은?

1. 품질보증 (2단계)

관련 제1115호 내용

1 고객이 보증의 구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가?

- 예 → **용역 유형의 보증** 별도 수행의무
- 아니오 ↓

2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추가 용역을 제공하는가?

- 예 → **용역 유형의 보증** 별도 수행의무
- 아니오 → **확신 유형의 보증** 별도 수행의무 아님

2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 **법률**에서 요구하는지? (결함이 있는 제품의 구매위험에서 고객 보호 목적)
- ✓ **보증기간** (길수록 별도 수행의무일 가능성이 높음)
- ✓ 기업이 수행하기로 약속한 **업무의 특성**

1. 품질보증 (2단계)

제시된 의견

견해 1

시장에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고 품질수준이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경쟁사 제품에 대한 평균적인 보증기간을 중요한 지표로 고려하여 확신 유형의 보증기간을 산정

견해 2

과거 보증 경험 및 제품(부품)의 기술적 수준을 고려하여 각 기업이 확신 유형의 보증 기간을 산정

- ✓ 설계. 제조 과정이 복잡하고 수만 개의 부품이 소요되는 자동차산업에는 유사한 품질의 benchmark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음 → 같은 기능의 부품도 회사마다 품질이 다를 수 있음
- ✓ 회사가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 차량의 설계. 제작 시점에 존재할 수 있는 결함에 대한 판단이 가능함

1. 품질보증 (2단계)

TF 논의내용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함

- **이론적 관점에서는 견해 2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현실적 어려움(증거력의 문제) 때문에 실무적으로 견해 1에서 제시된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보증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대안 1과 같이 업종 평균 보증기간을 우선 고려하되, 다른 보증기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보증의 성격과 범위는 회사별·제품별·시장별로 다를 수 있어,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 시장별 조건(예: 법률, 도로 상태, 기후)이 다르다면 확신 유형의 보증 수준도 달라질 수 있음
  - ✓ 제품의 결함을 보상해 주는 성격의 보증 의무는 확신 유형의 보증에 해당하며, 제품의 결함이 없음에도 추가 보상을 해주는 보증의무는 용역 유형의 보증으로 보아야 할 것임
  - ✓ 기업이 채택한 부품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확신 유형의 보증기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임

2. 의약품 위탁생산계약 (2단계)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 회사는 바이오의약품을 위탁생산(CMO)하는 기업으로, 생산을 전략적으로 아웃소싱하는 제약사들이 주요 고객이며, 논의대상 약품은 시판 중 상품임
- 논의대상 계약(11단계까지 계약)의 주요 서비스 및 제품 생산 프로세스 내용

진행단계	내 용
1단계~4단계	• 고객사는 생산공정기술 등을 회사에 이전 • 생산공정기술 등이 제대로 이전되었는지 검사하기 위해 시제품 생산
5단계~6단계*	• 임상용제품의 생산 및 임상시험 지원 업무
7단계	• 규제기관의 승인을 위한 제품 생산 (승인 후 상업 판매하게 되며, 11단계의 제품과 동일)
8단계~10단계	• 고객사의 규제기관 승인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11단계	• 상업용 제품 생산

* 이미 시판 중인 상품인 경우 임상시험은 요구되지 않아 '5~6단계'는 수행하지 않음

2. 의약품 위탁생산계약 (2단계)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 고객과의 계약은 위탁생산 약품별로 진행되며, 11단계까지 계약 시, 1단계부터 11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
  - ✓ 항체의약품 제조 규정 상 제조공장을 옮길 경우 첫 단계부터 다시 진행해야 함
- 회사는 고객과의 위탁생산 계약에 따라 특정약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이 계약 이행은 제조시설에 대한 규제기관의 제조승인(고객의무)을 전제로 함
- 고객은 규제기관의 최종 승인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상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다면 어느 단계에서 고객이 해지하더라도 11단계 최소주문수량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음

1~11단계(5, 6단계 제외)를 모두 포함한 계약에서 구별되는 수행의무는?

2. 의약품 위탁생산계약 (2단계)

관련 제1115호 내용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구별됨

≫ 하나의 수행의무

1 재화나 용역이 구별될 수 있음

-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하여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음

2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약속이 계약상 구별됨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음

※ **약속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목적

① 각 재화나 용역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지

②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투입한 **결합품목을 이전**하는지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의 예

✓ 재화나 용역을 **사용**

✓ 폐물 가치보다 큰 금액으로 **매각**

✓ 그 밖에 경제적 효익이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보유

둘 이상의 약속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예

✓ 해당 재화나 용역과, 다른 재화나 용역을 **통합**하는 유의적인 용역 제공(**결합산출물**을 위한 **투입물**로 사용)

✓ 해당 재화나 용역은 다른 재화나 용역을(에 의해) 유의적으로 **변형**하(되)거나 **고객 맞춤화** 함(됨)

✓ **상호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음:

2. 의약품 위탁생산계약 (2단계)

제시된 의견

견해 1 단일의 수행의무로 식별

- 계약의 주된 목적은 고객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고객이 원하는 상업용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각 단계는 상호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음

견해 2 두 가지 (❶1~10단계, ❷11단계) 수행의무로 식별

- 1~10단계는 고객이 제조시설에 대한 승인을 받아 제조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이며, 고객이 제조시설을 승인 받지 못할 위험과 관련되나,
- 11단계는 외부의 수요에 따라 품질수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서비스이며 향후 제품 수요에 따른 고객의 주문수량 위험과 관련되어 서로 구분

견해 3 1-11단계 각각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

- 각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고객이 효익을 얻으므로 각 단계별로 수행의무를 식별할 수 있음

2. 의약품 위탁생산계약 (2단계)

TF 논의내용

단일의 수행의무라는 의견(견해 1)이 **가장 많음**

- 1~11단계 전체가 하나의 위탁제조용역의 일환으로서, 이 계약의 목적은 고객맞춤화 또는 특화된 하나의 프로세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임

  → **계약 전체를 하나의 의무**로 보아야 함

  - 1-11단계의 각 약속은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음**

    ✓ 고객이 10단계 까지만 회사(A)와 계약하고, 다시 다른 회사(B)와 CMO계약을 하게 되면 그 회사(B)는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

  - 단, 활동 중 미래수행의무 준비활동(예: set-up)의 유무 및 그 범위는 판단이 필요

3. 여행패키지 상품 (2단계)

사실관계

- **회사(여행사)는 여행상품을 항공, 숙박, 식사 등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고객에게 판매**
  - ✓ 통상적인 여행패키지 상품은 항공권(운송), 숙박권, 입장권, 가이드 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을 구성하는 거래처 선정은 회사가 수행
  - ✓ 회사는 운송요금, 숙박요금, 입장권, 기타운송, 가이드 경비 등을 고객에게 수탁 받아 대신 지불(결제)
  - ✓ 회사는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성하는 여행업자(항공사, 호텔, 식당, 가이드 등)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여행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 회사는 패키지 상품의 개별 구성요소를 항공권, 항공권+숙박권, 교통권 등 다양한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기도 하며, 각각의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판매하기도 함
- **회사는 여행객에 판매할 항공권을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항공권을 미리 Hard block(*) 형태로 매입 → 항공권 보유로 인한 위험과 효익을 회사가 부담**

* 항공사와 특정수량의 항공권을 낮은 가격으로 대량구매하기로 합의하고 그 항공권의 재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여행사)이 항공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매입

3. 여행패키지 상품 (2단계)

쟁점사항

1. Hard block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패키지 상품의 경우 항공권의 공급과 여행 알선이라는 수행의무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가?
2. 1에서 각각의 수행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면, Hard block 항공권 판매는 총액, 여행패키지에 포함된 나머지 여행 알선 업무는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가?

※ 가정

✓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서, 항공권을 제외한 나머지 재화나 용역(숙박, 기타운송, 입장권, 여행가이드 등)을 구별할 수 없음 → '여행알선용역'으로 묶을 수 있음

3. 여행패키지 상품 (2단계)

관련 제1115호 내용

고객에게 재화·용역 제공할 때 다른 당사자가 관여할 때 약속의 성격을 판단

» **본인 : 정해진 재화와 용역 자체를 제공하는 수행의무**
대리인 : 다른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수행의무

약속의 성격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 고객에게 제공될 정해진 재화·용역 식별
- ✓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정해진 재화·용역 각각을 통제하는지 판단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정해진 재화·용역 각각을 통제하면 기업이 본인(총액 수익인식), 통제하지 못하면 대리인(순액 수익인식)

기업이 본인이라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통제
- 다른 당사자에게서 받은 재화나 다른 자산 (이후 고객에게 이전)
- 다른 당사자가 수행할 용역에 대한 권리 (용역 제공 지시 능력)
- 다른 당사자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투입물, 이후 다른 재화나 용역과 결합)

3. 여행패키지 상품 (2단계)

TF 논의내용

Hard block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패키지 상품의 경우 항공권의 공급과 여행 알선이라는 수행의무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함

- **하나의 수행의무 : 고객시각에서 패키지 상품은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항공권 공급과 그 외 여행알선 용역에 대해 상호관련성과 상호의존도가 높음**
  - ✓ 여행사는 항공권 조건에 따라 후속 여행일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용역제공과 상호관련성과 상호의존도가 높음
- **별도의 수행의무 : 항공권은 전체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성하지만, 유의적인 통합용역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움**
  - ✓ 여행패키지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이미 시장에서 판매하는 여러 여행상품 구성요소를 단지 조합하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유의적인 통합용역을 제공하거나 고객맞춤화 된 용역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움

3. 여행패키지 상품 (2단계)

TF 논의내용

각각의 수행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면, Hard block 항공권 판매는 총액, 여행패키지에 포함된 나머지 여행 알선 업무는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가?

Hard block 항공권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에는 대부분 이견이 없었으나, 항공권 공급 외 **여행알선 용역**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

- **순액으로 인식 : 회사는 숙박, 가이드 등 현지 여행용역과 고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여행알선 부분에서 회사는 대리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총액으로 인식 : 회사가 고객과의 관계에서 패키지 상품 제공의 주된 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관련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회사가 이를 통제하므로 본인에 해당**
  - ✓ 회사는 패키지 상품 구성 시 숙박, 가이드 등을 선택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므로 고객에게 해당 재화나 용역 제공 전 이를 통제한다고 볼 수 있음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 기업은 간접투자기구(SPC)에 자산(주식, 인프라, 부동산 등)을 판매하고, 일정기간 후에 해당 자산의 우선매수선택권이나 콜옵션을 부여받음
- 재매입가격(콜옵션 행사가격)은 행사시점의 공정가액, 감정가액, 제3자 입찰금액, 또는 매입금액에 향후 인상률 등을 복리계산한 금액 등으로 지정됨
  - ❖ 인프라 및 부동산 같은 실무자산은 최초 판매가격보다 통상적으로 행사가격(재매입 예상가격)이 큰 경우가 대부분 (인플레이션 등 고려)

1. 기업이 우선매수선택권(우선매수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을 보유하면, 해당 권리가 K-IFRS 제1115호에서 규정하는 재매입약정에 해당하는지?

2. 기업이 자산 판매시점에 부여받은 재매입약정의 행사가격이 미래 행사시점의 공정가치와 같다면, K-IFRS 제1115호에 따른 회계처리는?

관련 제1115호 내용

재매입약정

- ✓ 자산을 판매하고, 그 자산을 다시 사기로 약속하거나 다시 살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계약
- ✓ 일반적으로 세가지 형태
  ① 선도: 자산을 다시 사야하는 기업의 의무
  ② 콜옵션: 자산을 다시 살 수 있는 기업의 권리
  ③ 풋옵션: 고객이 요청하면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기업의 의무

선도와 콜옵션의 회계처리 ≫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지 못함

- ✓ **판매가격 > 재매입가격** ➤ **리스**로 회계처리
- ✓ **판매가격 ≤ 재매입가격** ➤ **금융약정(차입거래)**으로 회계처리

TF 논의내용

기업이 우선매수선택권(우선매수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을 보유하면, 해당 권리가 K-IFRS 제1115호에서 규정하는 재매입약정에 해당하는지?

행사시점·가격 등을 고려할 때 **우선매수선택권이 실질적인 경우에만,** 우선매수선택권을 K-IFRS 제1115호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재매입약정(콜옵션)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 부동산 유동화 거래의 우선매수선택권은 **개별 계약별로 판단**해야 하며, SPC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고, SPC가 청산할 때** 자산을 **원래의 매도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우선매수선택권을 제1115호의 **재매입약정**(콜옵션)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
- 우선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 행사가격이 불분명**하면 **SPC**(매수자)가 **자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SPC**(매수자)가 **자산을 인식**
- 우선매수선택권의 **형식적 요건에 관계없이, 통제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선매수선택권이 재매입약정(콜옵션)에 포함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임

TF 논의내용

기업이 자산 판매시점에 부여받은 재매입약정의 행사가격이 미래 행사시점의 공정가치와 같다면, K-IFRS 제1115호에 따른 회계처리는?

SPC의 **존속기간**과 SPC의 **자산매각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동 거래의 목적**은 **자금조달**일 것이므로, 행사가격이 **공정가치**인 경우에도 **금융약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 그러나 행사시점이 확정되어 있고 행사가격이 공정가치라면, SPC(매수자)가 자산을 원래의 매도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1, SPC(매수자)가 자산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는 의견도 제시

  *1 행사가격이 공정가치인 경우 원래의 매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없기 때문
  *2 이러한 경우 원래의 매도자가 SPC에게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에 해당(SPC가 자산 인식)

- 또한 **매수자**에게 정해진 기간에 **자산 매각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행사가격이 공정가치라도 금융약정**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

배경정보 및 쟁점사항

-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18년도부터 적용)이 제1011호 '건설계약' 을 대체
  - IAS 11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었던 '건설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IAS 11이 아니라 IAS 37을 적용하게 됨

손실부담계약 평가에 충당부채 기준서(제1037호)를 적용할 때, 해당 기준서에서 언급하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피불가능 원가의 범위는?

관련 기준서 내용

제1011호 건설계약

-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
- **총계약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

1. 특정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
2.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 → 특정 계약에 배분할 수 있는 원가
3.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원가

제1115호, 제1037호

- **손실부담검사를 IFRS 15에 포함하지 않음** (1115.BC296)
-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불가능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경우 충당부채 인식** (1037.66)
- **회피불가능 원가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최소 순원가로서 (1)과 (2) 중 적은 금액** (1037.66)

  (1)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

  (2)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나 위약금

IFRS 해석위원회 결정사항 (2018년 3월)

IAS 37의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정의에서 회피불가능원가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준 개정 절차를 수행

1.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는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directly relate to the contract) **원가'**로 구성됨
2.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와 관련되지 않는 원가를 설명하는 사례를 추가**
3. **IAS 37에 대한 좁은 범위의 개정 절차로 진행**

한국회계기준원 Korea Accounting Institute KAI

Thank You

Korea Accounting Institute

We bring the finest expertise and insight to our work.
We maintain our independence and fairness.
We are transparent in our decision-making process.
We pursue honesty and integrity.
We trust, communicate openly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